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0월 7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대통령령 제2106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6조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호”를 “5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로, “국민주택”을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10년”을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7년)”으로, “주택으로서”를 “국민주택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임대한 주택”을 “임대한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167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을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수도권 외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영 제156조제1항)

(1)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

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영 제167조의5제1항제1호)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영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0월 7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강만수

●대통령령 제2106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